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4년 12월 22일
(월요일)

강북신문 7면

공공장소에서 음주금지 건의안 통과

박문수 의원, 어린이공원 등 소란·난동 금지위해



박문수 의원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발의한 ‘공공장소 음주 금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15일 제1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담배값 인상을 추진한다는 금연대책을 발표했지만 건강에 해롭기는 마찬가지인 술에 대한 규제는 담배에 비해 느슨한 편이고 특히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에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지만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할 어린이공원 등에서 술 취한 사람들의 소란·난동으로 휴식을 방해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공공장소에서의 폭음이 단순히 실수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 폭행 등으로 이어져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처럼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문수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북부신문 10면

강북구의회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장소 음주금지 건의안 통과

박문수 의원, “국민 피해 주는 행위 미연에 방지코자 발의”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발의한 ‘공공장소 음주 금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1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문수 의원은 “‘공공장소 음주 금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정부가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담배값 인상을 추진한다는 금연대책을 발표했지만 건강에 해롭기는 마찬가지인 술에 대한 규제는 담배에 비해 느슨한 편이고 특히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에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다”며,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지만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할 어린이공원 등에서 술 취한 사람들의 소란·난동으로 휴식을 방해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공공장소에서의 폭음이 단순히 실수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 폭행 등으로 이어져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처럼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 박문수 의원이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장소 음주금지를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

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현규 기자

(donstopme@hanmail.net)

박문수 의원, 어린이놀이터 등 內 음주금지 건의안 통과

금연구역처럼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발의한 '공공장소 음주 금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15일 제 1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가장 안전한 곳이 돼야 할 어린이공원 등이 술 취한 사람들의 소란·난동으로 휴식을 방해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폭음이 단순히 실수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 폭행 등으로 이어져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처럼 어린이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을 하였다.

정부가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담배값 인상을 추진한다는 금연 대책을 발표했으나, 건강에 해롭기는 마찬가지인 술에 대한 규제는 담배에 비해 느슨하다. 금연구역에서는 공공건물, 병원, 학교, 음식점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건물이 포함되고, 버스정류장, 공원, 길거리 등은 조례 제정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처럼 금연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반면 금주구역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음주정책통합지표와 OECD 국가 간 비교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음주정책 평가는 21점 만점에 7점으로 조사 대상 30개 나라 중 22위였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몇몇 술 취한 사람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 영국

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거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벌금을 부과할 뿐 아니라 영장 없이 체포도 할 수 있으며,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의 주취 상태는 1873년부터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처럼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박문수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je1718@naver.com〉



▲ 박문수 의원.